

##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11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6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11. 1~11. 30)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11.2	전기뚝질기	전화	내구연한과 소멸시효	내구연한이 5년정도라 해도 소멸시효의 10년이란 기간은 관리해야함.
11.6	형광등기구	내방	결함의 입증여부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 판정은 후에 공식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한데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11.8	자동세정 건조식변기	전화	완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의 책임 한계	보험/피해보상(책임한계)
11.13	전기매트	내방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 사고발생시 보상 해주고,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을 계약서 에 넣으려 하는데, 그 문구를 완전하고 간략하게 만들고 싶음	계약서 작성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협회 차원에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 요령 검토중
11.15	라디오수신기	내방	대형 양판점 납품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관 형태의 강제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 검토중
11.16	전기매트	내방	제품에 부착하는 PL관련 주의 및 경고 사항의 글씨 크기에 대한 규정 문의	국내 규정은 부재
11.22	전열보오드	내방	주의 및 경고 label부착시 공간부족으로 붙이기가 힘들 때의 방법	사용설명서에 모두 적어 놓는 것도 바람 직함
11.28	전선	내방	PL표시사항은 박스에도 하나?	중요한 경고문구만 박스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시사항이나 사용상 주의사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